

성희롱 · 성폭력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매뉴얼 및 서식

202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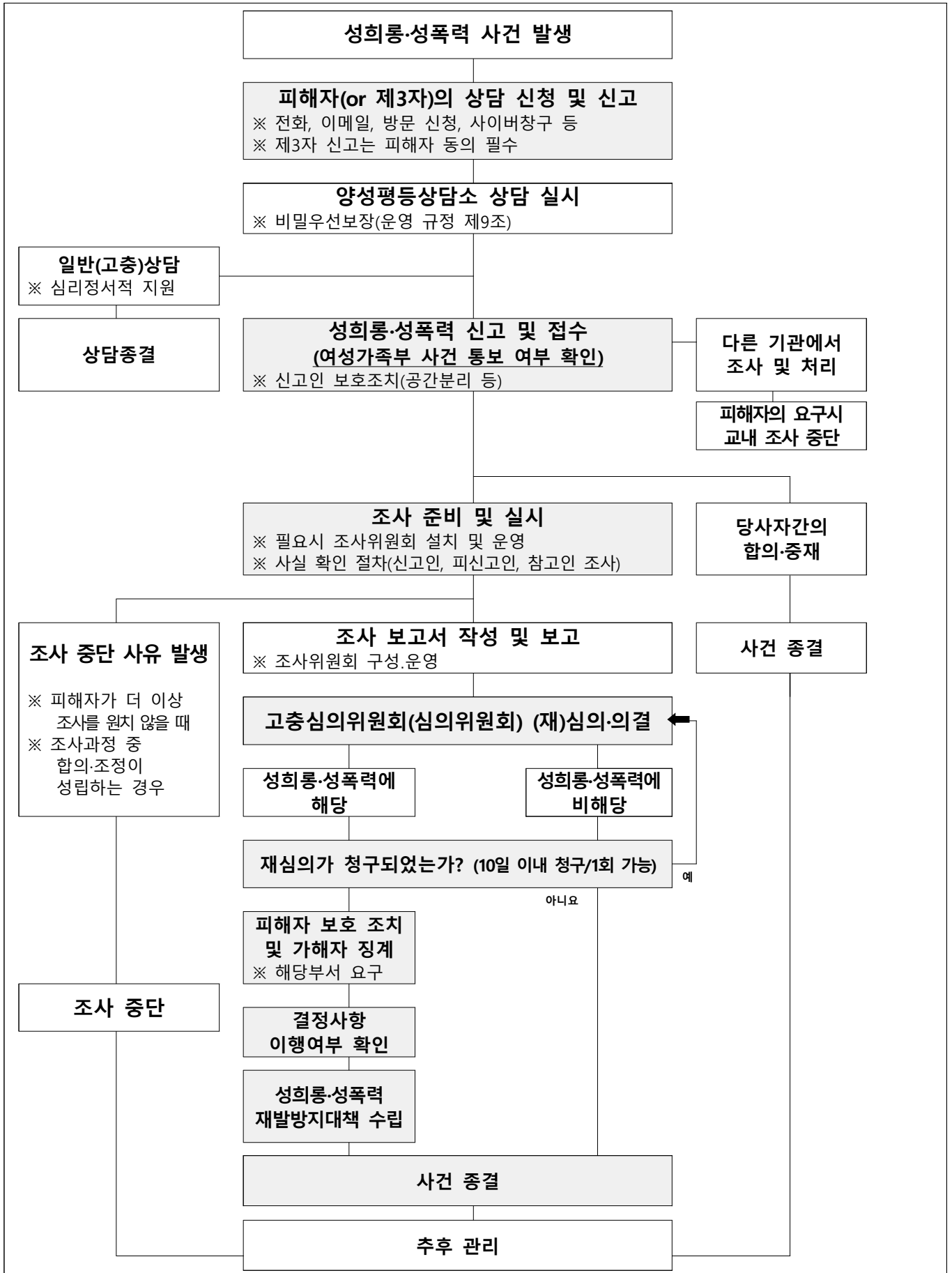


I.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규정 바로가기: https://rule.mokwon.ac.kr/lmxsrv/law/lawFullView.do?SEQ=499&SEQ_HISTORY=1334)

II. 사건 처리 절차도



Ⅲ.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

□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됨.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3.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행위.

□ 상담단계

- 양성평등상담소 상담은 고충상담과 신고 접수 상담으로 나뉘지며, 상담을 희망하는 대학 구성원은 양성평등상담소 전화, 이메일, 방문 신청,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 신청가능함.
- 고충상담은 피해자가 신고 접수를 통하여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

치 않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로, 일반상담으로 진행되며, 신고 접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없음.

※ 신고 접수가 진행 중인 경우, 상담 요청시 타 기관 연계

-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실시 ➔ 다양한 사건 해결 방식 안내
- 상담의 비밀 유지: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원칙. 단,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 적용될 수 있음. 신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시 상담 내용 및 피해 사실은 인권센터 업무 관련자에게 공유될 수 있음. 상담 중 위험이 관찰될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상담은 피해자 당사자 외에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나, 사건 신고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3자가 가능함.

□ 사건 신고 및 접수 단계

- 상담 후 피해당사자나 제3자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하는 과정.
- 신고 관련 서류 작성: 신고서와 진술서, 신고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관련 자료 제출: 사건 관련 증거나 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 제출 가능
- 제3자가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의향이 있어야 신고 절차 진행 가능.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조사 거부 및 회피 등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할 수도 있음.

□ 조사 단계

- 조사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 구조적 문제, 공동체적 책임을 확인.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진행.
-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 당사자들의 면담, 진술서, 자료 제출 및 참고인(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사람, 기타 당사자가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사람) 조사 등을 진행함.
- 사건 조사는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사 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제13조(회의 및 조사) 제4항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 심의 단계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심의 의결. 피신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회복이나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논의함.
- 규정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결과를 통보함.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심의 절차에 출석할 수 있고,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 재심의 신청: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제24조(재심의)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 사건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의 재심의 신청 가능. 불복을 신청할 만한 추가 자료 제출.

□ 사후 관리

- 사후 관리는 최종 심의 후, 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조치를 말함. 심의 결과가 유지되었을 경우 관계 부서에 징계 요구, 권고, 조치 등을 통보하고,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의 권리와 역할

- 발언할 권리: 사건을 신고할 권리,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건 평가 이전에 선 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
- 2차 피해에서 안전할 권리: 위협이나 괴롭힘,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언어적·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건의 왜곡이나 왜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
- 조력을 구할 권리: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권리
- 피해회복 및 지원을 요청할 권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

참고문헌

-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2024), 인권침해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매뉴얼 및 서식
-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2021),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매뉴얼

IV. 신고 서식

- 붙임1 신고서
- 붙임2 신고인 서약서
- 붙임3 진술서(소명서)

신고서

사건번호	
접수일자	
접수 담당자	

1. 신고인

이름		성별		분류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소속	학번/사번(교번)/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제3자 신고일 경우 피해자					
이름		성별		분류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소속	학번/사번(교번)/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신고인과 관계				

※ 신고인과 피해자의 신고접수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피신고인

이름		성별		분류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대학원생 <input type="checkbox"/> 교원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외부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소속	학번/사번(교번)/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피해자와 관계				

3. 신고유형 및 피해 내용

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성희롱·성폭력 /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
신고 요지 피신고인에게 전달되는 내용으로, 인권침해 사항 및 주요 내용 간략히 작성	
피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문제가 되는 행위, 일시, 장소, 목격자 혹은 증인 여부	

4. 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

최초 발생일: _____ 최근 발생일: _____
발생횟수: 일회성 반복성(총 회)

5. 피해 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 변호사·경찰의 도움을 구함
- 기타(구체적으로):

6.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인 행동의 변화

- 중지 감소 변함없음
- 증가 기타

7. 희망 조처 사항 (중복체크 가능)

- 징계 등 규정에 따른 처벌 요구
- 사과 및 중재
- 공간분리 및 임시 보호조치
- 기타

8. 기타 하고 싶은 말 (학교/피신고인에게 바라는 사항 및 원하는 사건 처리 방향)

9.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목원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의 원활한 상담·조사·처리를 위해 신청인이 위에 기재한 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 및 사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유기간: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안내(제3자-교내관련부서, 수사절차 진행 시 경찰, 검찰, 법원 등)

신고인 보호 및 조치, 징계 등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신청인이 기재한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 및 사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유기간: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며, 목원대학교의 인권센터에 따른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_____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귀중

진술서(소명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번/교번	
소속		연락처	
주소			

본인은 20 년 월 일 신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서(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진술인 _____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

※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 진술을 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